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17 |
|----------|-----|

제출년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법제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용어의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변경(안 제1조)

-“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안 제 2장)

나. 반복되는 용어 축약 및 용어 순화(안 제5조)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6 .02.05~2016 .02.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

| 방 칙 안 | 부패영향평가 의견 | 부서반영사항 |
|--|---|---|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한 차례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한 차례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제7조제2항제2호 민간위원 : 외국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적지위”를 “법적 지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앓은 자”를 “앓은 사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 내외”를 “15명 이내”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구의원 1명 및 관내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 부서장

제7조제2항제2호 중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남구</u>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u>자</u>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u>강남구</u>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4. (생략) <p>제5조(지원대상) ① <u>강남구</u>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u>법적지위</u>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u>취득한</u> |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강남구</u>-----</p> <p>제2조(용어의 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사람을</u>----- 2. -----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u>----- 3. 4. (현행과 같음) <p>제5조(지원대상) ① -----</p> <p style="text-align: center;">----- <u>사람을</u> -----</p> <p style="text-align: center;">----- <u>법적 지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취득한</u> |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
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생략)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
청장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지
원시책 자문을 위하여 강남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구의
회 의원, 교육청·경찰서·고
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
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사람

3. -----
----- 않은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② -----
----- 15명 이내-----

사람으로 --.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구의
원 1명 및 관내 교육청·경찰
서·고용센터·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관
련 업무 부서장

2. -----

-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7급 진나영(3423-5195)